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36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모경중 · 정진욱 · 김교홍
이용선 · 이재강 · 박용갑
문금주 · 신정훈 · 권향엽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매’는 대가의 수수를 요건으로 함.

그렇기에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약취·유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이에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예의 이용·가담 강요 등을 목적

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제2항 중 “성매매”를 “범죄행위예의 이용·가담 강요, 성매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 사람은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하는 행위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⑤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예의 이용·가담의 강요,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으로 제4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죄로 인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생 략)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동력 착취, <u>성매매</u> 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 <u>범죄행위에의 이용 · 가담 강요, 성매매</u>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 사람은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 · 감금하는 행위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 ·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

<u><신 설></u> <u><신 설></u>	<u>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 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u> ⑤ <u>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가담의 강요,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또는 국외 이송 목적으로 제4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제2항과 동일한 형 으로 처벌한다.</u> ⑥ <u>제4항 또는 제5항의 죄로 인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 로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 일한 형으로 처벌한다.</u>
--	--